

| 환자안전 보고체계 | Ⅰ 운영 |
|-----------|------|
|-----------|------|

| 관리번호  | W-2.3        | 제정일   | 2013년 02월 15일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
| 승인책임자 | 병원장          | 최근개정일 | 2016년 10월 31일 |
| 검토책임자 | 규정관리위원회위원장   | 시행일   | 2016년 12월 01일 |
| 주무부서  | QI실          | 검토주기  | 3년            |
| 관련근거  | 의료기관인증기준 2.3 | 검토예정일 | 2019년 10월 30일 |

## |. 목적

환자안전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보고체계를 수립하고 원인 분석 및 개선활동을 통해 효율적이며,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.

### Ⅱ. 용어정의

- 1. 환자안전사고
  - 의료를 제공 과정에서 오류를 예방하고 오류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하는 손상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것
- 2. 적신호사건(Sentinel event)
  - 환자의 기저질환과 관계없이 예상치 못한 사망이나 주요부위의 영구적인 손상을 사져온 사건 (환자의 자살, 잘못된 환자, 잘못된 수술부위 수술, 수혈로 인한 만성적 또는 치명적 질환이 발생한 경우, 강간, 폭력, 살인)
- 3. 위해사건(Adverse event)
  - 예측할 수 없고 계획되지 않았던 손상 및 생해나 심각한 신체적, 정신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
- 4. 근접오류(Near miss)
  - 환자에게 발생 할 수 있었던 사고나 상황이 적절한 중재에 의해 환자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
- 5. 근본원인분석(Root Cause Analsis, RCA)
  - 적신호 사건 발생 또는 발생가능성을 포함하여 성과 저하의 기저에 있는 기본 요인 또는 원인을 파악하는 절차
- 6. 고장유형 및 영향 분석(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, FMEA) 인간의 지식과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황에서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, 오류 발 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개선계획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절차

## Ⅲ. 정책

- 1. 병원 내에서 환자 부주의 및 병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또는 병원 시설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 직원 또는 목격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은 사고등급[별첨 2]에 따라 반드시 안전보고 프로그램[별첨2]에 보고한다.
- 2. 환자안전사고 인지 후 정해진 시간 내에 안전보고 프로그램을 통한 전산보고와 유선보고 한다.
- 3. 보고해야 할 내용은 사건 내용, 부서 조치사항, 부서 원인분석, 부서 추후 개선안을 포함한다.
- 4. 환자안전사고 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활동을 시행하며, QPS위원회와 병원장 (반기별)에게 보고한다.
- 5. 환자안전보고 내용을 관련 직원들과 공유한다.



## Ⅳ. 절차

- 1. 환자안전사고 보고 대상
  - 1) 환자안전사고 종류

| □ 투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□ 낙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□ 수혈                         | □ 수술   | □기   | 타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□ 처방오류 □ 조제오류 □ 투약오류 □ 전산오류 □ 보관오류 □ 기타: | □ 시설결함 □ 약물사용 □ 직원부주의 □ 환자부주의 □ 기타: | □ 검사과정오류 □ 불출오류 □ 투여오류 □ 기타: | <ul> <li>□ 마취 관련</li> <li>□ 계수맞지 않음</li> <li>(거즈,기계,</li> <li>주사침,기타:)</li> <li>□ 투약오류</li> <li>□ 천공/출혈</li> <li>□ 삼출물</li> <li>□ 기타:</li> </ul> | <ul> <li>□ 검사관련</li> <li>□ 치료관련</li> <li>□ 시술관련</li> <li>□ 의료장비관련</li> <li>□ 시설물 관련</li> <li>□ 화재</li> <li>□ 감염</li> </ul> | <ul><li>□ 자살/자해</li><li>□ 전산장애</li><li>□ 간호관련</li><li>□ 식사관련</li><li>□ 기타:</li></ul> |

- 2) 환자안전사고 등급 분류 [별첨 2]에 따라 보고한다.
- 2. 환자안전보고 절차
  - 1) 보고범위: 내원하는 환자, 보호자와 관련된 모든 환자안전사고
  - 2) 보고자 :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 직원 또는 목격한 직원
  - 3) 보고 시기
    - (1) 적신호사건 : 사고 발생 즉시 QI실(내선1157) 유선보고 후, 24시간내 환자안전보고서 작성하여 전산보고
    - (2) 위해 사건 : 사고를 인지한 후 48시간 이내 보고(구두보고, 전산보고)
    - (3) 근접 오류 : 사고를 인지한 후 시간 72시간 이내 보고
  - 4) 보고 방법
    - (1) 환자안전사고의 내용과 발생경위, 부서 조치사항, 부서 원인분석, 부서 추후 개선안을 안 전사고보고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으로 보고
    - (2) EMR 로그인→ 질지표관리→ 환자안전관리→ 환자명 조회 후 보고서 입력[별첨 3]
- 3. 적신호 사건 관리
  - 1) 사고 보고
    - (1) 보고범위 : 환자안전 등급분류 5~6등급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
    - (2) 적신호사건 발생 즉시 사건 관련 직원은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.
    - (3) 해당 부서장 또는 사건 관련 직원은 사건발생 즉시 QI실로 간단 구두보고 하고, 24시간 이 내 또는 환자안전사고 보고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으로 보고한다.
    - (4) QI실에서는 사건내용을 보고 받은 후 즉시 QPS위원회 위원장에게 간단하게 보고한다.
  - 2) 사고 분석 및 개선활동
    - (1) QI실에서는 적신호 사건을 인지한 후 상세내용을 파악하여 QPS위원장과 병원장에게 보고



하며, 근본원인 분석팀을 구성한다.

- (2) 근본원인 분석팀은 적신호 사건 발생과 관련된 부서 및 시스템적인 개선을 지원할 진료지원 부서,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리더 등이 포함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.
- (3) 근본원인 분석팀은 적신호 사건 발생 30일 이내 근본원인을 찾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QPS위원회에 보고한다.
- (4) QPS위원회는 보고서를 검토한 후 개선계획에 따른 정책결정 및 지원사항을 검토한다.
- (5) QI실은 적신호사건 내용, 원인분석, 개선활동 내용을 QPS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한다.

#### 4. 위해사건 관리

- 1) 사건 보고
  - (1) 보고범위: 3등급 ~ 4등급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
  - (2) 위해사건 인지 후 사건 관련 직원은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.
  - (3) 해당 부서장 또는 사건 관련 직원은 48시간 이내 환자안전사고 보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고 내용을 보고한다.
    - ( 단, 안전사고로 인해 긴급한 처치(3등급이상)가 필요한 경우 유선보고를 병행한다.)
  - (4) QI실은 사건내용을 보고 받은 후 즉시 QPS위원장과 병원장에 간단하게 보고한다.
- 2) 사고 분석 및 개선활동
  - (1) QI실에서는 사건내용에 따라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신호 사건에 준하여 개선활동을 실시한다.
  - (2) 그 외 사건은 월별 추이분석을 하고, 개선활동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상의하여 진행하며, QPS위원회에 보고한다.
  - (3) QI실에서는 위해사건의 내용을 분석하여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에 주기적(반기별)로 보고한다.
- 3) 보고 결과 공유

위해사고의 내용이 전 직원과 공유해야 할 경우 윌스공지사항과 원내 직원게시판를 통해 공유한다.

### 5. 근접오류 발생 시

- 1) 사건 보고
  - (1) 보고범위: 0등급 ~ 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
  - (2) 근접오류 발생 시 사건 관련 직원 또는 근접오류를 발견한 직원은 72시간 이내 환자안전 사고 보고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보고하며, 보고자의 비밀을 보장한다.
- 2) 사건 분석 및 개선활동
  - (1) QI실에서는 근접오류의 내용을 월별추이 분석하여 QPS위원회(월별)와 병원장에게 주 기적(반기별)로 보고한다.
  - (2) 보고된 근접오류 내용을 토대로 연 1회 FMEA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활동 을 수행한다.
- 3) 보고 결과 공유

관련내용은 윌스공지사항과 원내직원게시판를 통해 관련부서 또는 전 직원과 공유한다.



# V. 참고

- 1.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.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병원기준 3판, 2009
- 2. Joint Commission Resources. 의료는 안전한가? 근본원인분석의 도구와 기법, 2007
- 3. 건강보험심사평가원. QI 따라잡기, 2010.
- 4. 한국 QI간호사회. QI실무자에게 배우는 잘향상 활동 지침서, 2010
- 5. 한국의료QA학회지. 환자안전의 개념과 접근방법론, 2009

# [별첨]

별첨1. 환자안전사고 보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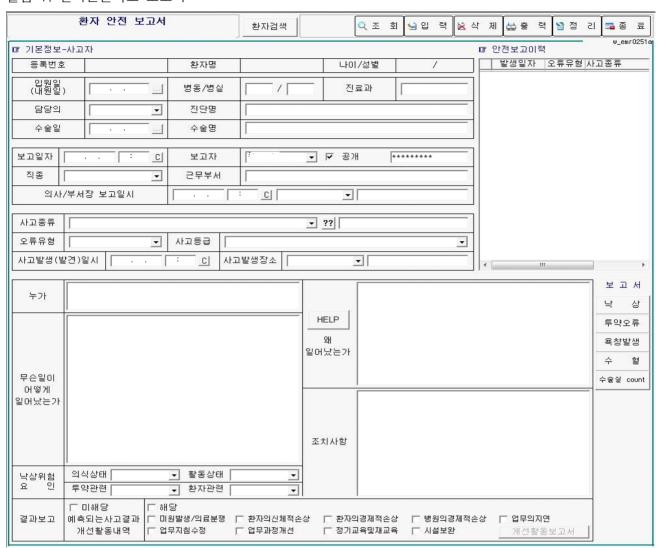
별첨2. 환자안전사고 보고 등급

별첨3. 환자안전사고 보고 체계

| 입안자   | 규정관리위원장 |  |
|-------|---------|--|
| 승인책임자 | 병원장     |  |
| 서명일   |         |  |



별첨 1. 환자안전사고 보고서



별첨 2. 환자안전사고 보고 등급

| 글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|--|
| 대상                  | 사건등급   |
|                     | Level 0.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근접오류<br>(Near Miss) | Level 1. 오류가 발생했으나 환자에게 도달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|
| (NOCH WISS)         | Level 2. 환자에게 투여/적용되었으나 해가 없거나,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함         |
| 위해사건                | Level 3. 일시적 손상으로 중재 필요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(Adverse<br>Event)  | Level 4. 일시적 손상으로 입원기간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적신호 사건<br>(Sentinal | Level 5. 생명의 위협으로 집중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영구적인<br>손상이 발생함 |
| Event)              | Level 6. 환자 사망을 초래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별첨 3.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

